



## 5. 근거법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○ 제출 근거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과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### ○ 주요내용

- (공간적 범위) 고성군 행정구역내 전역(521.811km<sup>2</sup>)
- (시간적 범위) 기준년도 2018년 / 목표연도 2025년
- (계획의 내용) 기 결정된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검토
  -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정비
  - 기 결정 및 신규 자연취락지구의 재검토
  -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재검토
  - 군계획시설 및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
- (의견청취 대상)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

### ○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성군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용도지역, 군계획시설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변경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, 특히 주민열람 공고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

-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따른 향후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찬성의견 채택.